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17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67,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유병호

[별지]

청구원인

1. 청구채권의 내역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006. 3. 22. 20,000,000원을 2006. 04. 18. 5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은 2007. 03. 09. 사망하였고 그의 처 D이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D과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698호로 제기하여 피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24,200,54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10. 10 . 28. 판결선고 하였습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 1174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일부 항소를 인용하여, 제 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2,003,45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선고를 2011. 5. 26.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 6. 18.에 확정되었습니다.

2.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1심 124,200,545원, 2심 82,003,455원 채권의 합계 원금 206,204,000원중 2014. 01. 27.까지 4번에 걸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서 이자 26,732,999원, 원금 12,536,692원의 일부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원금 193,667,308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피고의 그 책임재산을 찾지 못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항소심 2011. 05. 26.) 판결선고 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위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사정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처럼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존재하는 경우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22008 전원합의체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한번 전 소와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